

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4. 8.
보건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4년 6월 28일, 정 부

나. 회부일자: 2024년 7월 1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2024.8.20.)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2소위(2024.8.23.)

상정, 축조심사, 의결(원안가결)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3차 전체회의(2024.8.26.)

상정, 소위심사보고, 의결(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정부)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지방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관계를 상호 협력적인 방향으로 설정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위해식품의 회수결과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통보’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등 3개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임.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이지민)

정부가 제출한 일괄 개정을 위한 제정법률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 대한 국가의 관여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장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을 “통보” 또는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임.

일반적으로 “보고(報告)”는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업무절차 및 결과를 알린다는 뜻으로 사용되는 용어로, 그 사전적 의미를 보면, “일에 관한 내용이나 결과를 말이나 글로 알림”¹⁾, “주로,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일에 관한 내용이나 결과를 말이나 글로 알림”²⁾, “지시 또는 감독하는 자에게 주어진 일의 내용이나 결과 따위를 말이나 글로 알림”³⁾ 등으로 설명되고 있음.

한편, “통보(通報)”는 지위나 권한의 상하관계를 전제하지 않고 어떠한 사실을 알린다는 의미로 주로 사용되는데, 그 사전적 의미는 “통지

1)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2) 국립국어원 “우리말 샘”

3) 고려대학교 “한국어대사전”

하여 보고함. 또는 그 보고”⁴⁾ 또는 “어떤 사실을 알리어 줌”⁵⁾으로 그 의미가 풀이되어 있음.

“제출(提出)”은 그 사전적 의미를 보면, “문안(文案)이나 의견, 법안(法案) 따위를 냄”⁶⁾, “과제나 의견 따위를 내어놓음”⁷⁾으로 해석되는데, 일반적으로 일정한 문서의 형식으로 알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됨.

즉,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가 중앙부처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해당 업무에 대하여 중앙부처가 지방자치단체의 상급기관으로서 감독 권한이 있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대하여 개정안과 같이 그 용어를 “통보” 또는 “제출”로 변경하는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를 대등한 관계로 설정하고, 지방자치단체를 국가의 하부 기관으로 보는 인식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임.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4)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우리말 샘”

5) 고려대학교 “한국어대사전”

6)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우리말 샘”

7) 고려대학교 “한국어대사전”

5.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김미애)

없음.

6. 찬반토론의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원안가결

8.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 내용

체계·자구심사를 거쳤음.

[붙임] 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농수산물 품질
관리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제1조(「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의 개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제5항 중 “보고”를 “제출”로 한다.

제2조(「식품위생법」의 개정) 식품위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1항 후단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통보하여야”로 한다.

제86조의 제목“(식중독에 관한 조사 보고)”를“(식중독에 관한 조사 보고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보고하고”를 “통보하고”로, “보고하여야”를 “제출하여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보고”를 “통보”로 한다.

제3조(「축산물 위생관리법」의 개정)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의2제2항 본문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통보하여야”로 한다.

제34조 전단 중 “보고하여야 한다”를 “통보하여야 한다”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중 「식품위생법」 제 86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60조(안전관리계획) ① ~ ③ (생략) ④ 삭제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시· 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 에게 제2항에 따른 세부추진계 획 및 그 시행 결과를 <u>보고</u> 하게 할 수 있다.	제60조(안전관리계획) ① ~ ③ (현행과 같음) ⑤ ----- ----- ----- ----- <u>제출</u> ----- -----.

신·구조문대비표

– 9 –

<u>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u> 다만, 해당 식품등이 「수입식품 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수입한 식품등이고, 보고의무자가 해당 식품등을 수입한 자인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③ (생략) 제86조(식중독에 관한 조사 보고) ① (생략) ②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시·도지사(특별자치시장은 제외한다)에게 <u>보고하고</u>,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인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u>보고하여야 한다.</u>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에 따른 <u>보고</u>의 내용이 국민건강상 중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과 합동으로 원인을 조사할 수 있다. ④ (생략)	<u>처장에게 통보하여야</u> -----. ----- ----- ----- ----- ----- -----. ②·③ (현행과 같음) 제86조(식중독에 관한 조사 보고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u>통보하고</u> ----- ----- <u>제출하여야</u> -----. ③ ----- ----- <u>통보</u> ----- ----- ----- -----. ④ (현행과 같음)
--	--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1조의2(위해 축산물의 회수 및 폐기 등) ① (생략)	제31조의2(위해 축산물의 회수 및 폐기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축산물을 회수하여 폐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자는 회수·폐기 계획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미리 보고하여야 하며, 그 회수·폐기 계획에 따른 회수·폐기 결과를 보고받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를 지체 없이 <u>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u> 한다. 다만, 해당 축산물이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수입한 축산물이고, 보고의 무자가 해당 축산물을 수입한자인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 ----- ----- ----- ----- ----- ----- ----- ----- <u>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통보하여야</u> ----- ----- ----- ----- ----- ----- -----.
③·④ (생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34조(생산실적 등의 보고) 제22조제1항에 따라 도축업, 집유업,	제34조(생산실적 등의 보고) ----- -----

축산물가공업 또는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허가를 받은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축실적, 집유실적, 축산물가공품 또는 포장육의 생산실적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u>보고하여야 한다</u> .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를 거쳐야 한다.	----- ----- ----- ----- ----- ----- ----- ----- <u>통보하여야 한다</u> . ----- ----- -----.
--	---